

■■■ 서구시니어재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며, 이에 이용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①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리 방지
-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④ 어르신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며 어르신과 서구시니어재가센터는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센터에 보관한다.

◎ 계약 기간

- ① 본 센터의 계약 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 기간 중이라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계약 기간 1개월 전에 입소자(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보호자)는 15일 이내에 계약의 해지 및 지속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 ③ ②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만료 전까지 입소자(보호자)로부터 별도의 회신이 없으면 계약은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된다.
- ④ 계약 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 계약내용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입소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준수사항

-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계약서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범위, 급여비용,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요건, 계약해지 등을 포함한다.)

◎ 서비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단위: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6년도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6%
	40% 경감	9%
	60% 경감	6%
	일반	15%

▶ 비급여항목에 대한 이용료

비 급 여 현 황	비급여항목	산출근거	금액
	식재료비	1일 2식	1,800원
	간 식 비	1일 1회	500원
	이 미용비	-	-
	병원진료비	필요시	필요시

◎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①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장기요양보험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 변경의 경우
3.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② 이용료에 대한 규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무료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가 및 산정기준에 준한다.
 - 등급자의 월 이용료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15%, 9%, 6%, 0%로 한다.
 - 이용료는 통장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용료 미납시에는 미납액을 통보하고 그 후로 1개월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청구서를 발행하여 납부토록 한다.

③ 이용료 및 비용 부담,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시설의 이용 및 비용규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보호자나 입소자(보호자)의 추가적인 서비스 요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직후 보호자(입소자)는 시설에 알려야하고 시설은 보호자(입소자)와 합의하여 변경사항이 발생 시 바로 변경할 수 있다.

④ 급여변경방법 및 절차

시설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후 입소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며, 서비스제공 중 급여가 변경 할 때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된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 계약시,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②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이용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이용 어르신에 대한 간호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조치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센터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연 및 생활 편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과 부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⑤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또는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염과 훼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복구 의무

◎ 계약의 해제

시설 입소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고하자 할 때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 ① 입소자(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② 기관은 다음과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입소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③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에 퇴소 의사를 밝혀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기관의 의사로 인한 계약해지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해지 의사를 해지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입소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입소자(보호자)는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설 내에 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센터는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입소자(보호자)에게 송달처리 한다.